

『미래모빌리티 환경을 대비한 자동차 관리방안 개선 연구』
제 안 요 청 서

2023. 5.



I. 과업의 개요 1
 1. 용역명 1
 2. 과업수행기간 1
 3. 사업비 1
 4. 과업 추진 배경 1
 5. 과업목적 2

II. 과업의 범위 2
 1. 시·공간적, 내용적 범위 2
 2. 과업의 세부내용 3

III.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 6
 1. 참가 자격 6
 2. 입찰 및 업체선정 방법 6
 3. 평가기준 8

IV. 제안서 작성 기준 11
 1. 제안서 제출 방법 11
 2.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2

V. 과업의 수행지침 21
 [별지 서식] 21

I.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미래모빌리티 환경을 대비한 자동차 관리방안 개선 연구

- 부제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검사주기 및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보증범위 적정성 연구용역

2. 과업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270일)

- 과업 수행 중 여건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과업기간을 연장 및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음

3. 사업비 : 7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과업 추진 배경

- 산업기술 발달로 자동차의 제작기술이 향상되고, 전기차,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 * 친환경자동차 등록대수: '20년 820,329대, '21년 1,159,087, '22년 1,589,985
- 자동차 검사주기는 내연기관차 위주로 설정·운영 중으로, 사용 연료에 따라 주요 부품(배출가스 장치, 고전원전기장치 등)이 상이하고, 검사방법에도 차이가 있어 다양한 차종을 고려하여 검사주기도 개선 필요
- 이에, 자동차의 구조·장치 첨단화 및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검사에 대해 적절한 검사주기 연구 필요
- 또한,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로 자동차 구조·장치가 변화됨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고,
 - 중고자동차 구매시 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에 대한 재정비 필요

5. 과업 목적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검사주기 타당성 검증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준 및 방법과 보증범위 타당성 검증

II. 과업의 범위

1. 시·공간적, 내용적 범위

- (시간적 범위) 본 용역에 사용되는 주요 자료는 '2018년 자동차 검사주기 적정성 및 전기차 검사제도 연구' 및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2018년)' 이후의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공간적 범위) 국내의 기준 수립 및 개선을 목표로 하되, 사례 연구, 분석 및 문헌 검토 등 자료는 해외 사례를 포함함
- (내용적 범위)
 - 국내·외 자동차검사 실태조사
 - 자동차검사 주요지표별 추세 분석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의 사회적 파급효과 조사
 - 자동차검사와 유효기간 변화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현황 및 해외사례 조사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준 및 방법(안) 마련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보증 범위(안) 마련

2. 과업의 세부내용

가. 국내·외 자동차검사 실태조사

1) 국내 실태조사

- 조사방법 : 자료 수집 및 방문조사
- 조사대상 : 검사기관, 자동차제작사 등
- 조사내용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변화 경과 사유 및 설정 목적 등
 - 자동차검사 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항목 등 운영 현황
 - 차종별, 용도별, 검사종류별, 검사제도 운영 현황
 - 자동차제작사의 첨단 자동차검사 장비 운영 실태

2) 국외 실태조사

- 조사방법 : 인터넷 자료수집
- 조사대상 : 정부기관, 검사기관 등
- 대상국가 : 미국, 유럽, 일본 등
- 조사내용
 - 자동차검사 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항목 등 운영 현황
 - 차종별, 용도별, 검사종류별, 검사제도 운영 현황
 - 친환경자동차 및 첨단자동차 검사제도 운영 현황
 - 국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권고기준의 검토

- 3 -

편의 분석

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현황 및 해외사례 조사

- 조사방법 : 자료 수집, 방문조사, 인터넷 자료수집
- 조사대상 : 성능·상태점검자, 매매업자, 자동차경매장, 보험사 등
- 조사내용
 - 성능점검 시장 구조·현황 및 문제점 진단
 - 성능·상태점검 기준 및 방법 운영 현황
 - 성능·상태점검 관련 해외사례 조사
 - 성능·상태점검 보증 범위 타당성 조사

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준 및 방법(안) 마련

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보증 범위(안) 마련

- 5 -

나. 자동차검사 주요지표별 추세 분석

- 조사방법 : 자동차검사 통계자료 등 분석
- 조사대상 : 정기검사, 종합검사
- 주요지표 : 자동차검사 부적합 조기사정율, 자동차검사원 역량평가
- 조사내용
 - 차종별, 용도별, 검사종류 주요지표별 현황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별 주요지표별 현황
 - 주요지표별 현황 따른 시사점 분석
 - 주요지표별 현황과 교통안전의 상관관계 분석

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의 사회적 파급효과 조사

-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방법 비교
- 지정정비업체 부실검사 사례 및 문제점 검토
- 자동차검사 서식(검사결과표, 기능종합진단서, 부적합 통지서 등) 검토
- 친환경자동차 및 첨단자동차 검사 운영 현황
- 국외 선진국가의 친환경자동차 및 첨단자동차 검사제도 운영 현황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평균 보증기간 분석
- 차체 및 일반부품, 배출가스 부품의 평균 보증기간 분석

라. 자동차검사와 유효기간 변화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교통사고 예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정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 및 비용

- 4 -

III. 수행업체 선정

1. 참가 자격(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입찰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6 -

나. 선정절차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분야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후 업체 선정
-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제안서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제안서 기술평가
 -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기술 평가 수행
 -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붙임 기술평가표 참고
-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기술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 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3. 평가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제안업체 일반현황 (15)	제안업체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조직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자산 비율 등 경영현황	5	계량평가										
	신용도	- 최근 3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table border="1"> <thead> <tr> <th>배점기준</th> <th>배 점</th> </tr> </thead> <tbody> <tr> <td>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td> <td>5</td> </tr> <tr> <td>②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td> <td>4.5</td> </tr> <tr> <td>③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td> <td>4.0</td> </tr> <tr> <td>④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td> <td>3.5</td> </tr> </tbody> </table>		배점기준	배 점	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②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4.5	③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4.0	④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3.5
		배점기준			배 점									
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②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4.5												
③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4.0													
④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3.5													
연구인력	- 책임연구원의 경력	5	계량평가											
과업수행부 (85)	제안서 개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의 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	10	계량평가										
	과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성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 유사 연구용역과의 중복 및 병행 가능성	30											
	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25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10											
	연구조직 구성	- 수행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적절성	5											
	기타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5											
계			100											

(2)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신용도(5점)

배점기준	배 점
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②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4.5
③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4.0
④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3.5

○ 책임연구원 경력(5점)

구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점수	5	4	3	2

- 책임연구원 평가는 경력증명서상의 해당분야에 대한 참여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음

등급	참여 연구진 평가기준
(가)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7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11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술사
(나)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4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8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다)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라)급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 책임연구원의 해당분야 업무는 자동차 관련업무에 한함
- * 증빙서류 제출

(3)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구분	배점 (A)	평가정도					
		매우우수 (점수=A×1)	우수 (점수=A×0.8)	보통 (점수=A×0.6)	다소 미흡 (점수=A×0.4)	미흡 (점수=A×0.2)	
제안업체 일반현황	5	5	4	3	2	1	
과업수행부	제안서 개요	10	10	8	6	4	2
	과업 접근방법	30	30	24	18	12	6
	수행계획	25	25	20	15	10	5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10	10	8	6	4	2
	연구조직 구성	5	5	4	3	2	1
기타	5	5	4	3	2	1	

(4) 기술능력평가 점수 선정

-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80%

나. 입찰가격 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 산출

IV.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제출 방법

-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 따름
- 나. 접 수 처 : 입찰공고문에 따름
- 다. 접수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 라.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열람 및 문의
 - 담당과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 연락처 : 044-201-3859
- 마.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가. 일반사항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필요 시 추가하거나 변경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A4용지 30매 이내로 하며 아래한글로 작성하며 좌절을 원칙으로 함(단, 불가피한 경우 A4 크기로 접어서 포함시킬 수 있음)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문서(pdf) 제출(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논리적·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해야 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체결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 11 -

- 2) “을”은 과업수행 중 중요 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3) “을”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로 해당 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이 참석하는 자문위원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 자문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 4)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자문회의 개최사항은 “갑”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기준

-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본 과업의 제안요청서 중 참가자격을 명기된 인력이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이 본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갑”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
- 2) “갑”은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당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을”은 과업수행 중 연구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참여 인력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갑”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용언어, 단위 및 용어해석

-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준언어는 한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나.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V. 과업의 수행지침

1. 일반 사항

- 가. 용어의 정의 및 해석
 - 1) 본 과업지시서에서 국토교통부를 “갑”, 용역사를 “을”이라 칭한다.
 - 2)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갑”과 “을” 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 나. 협의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
 - 1) 용역기간 중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검토 및 처리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이를 작성하여 “갑”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12 -

한하여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용어의 해석상 견해차가 있는 경우 한글이 우선한다.

- 2) 본 과업에 사용되는 단위는 meter, kg, hour 등 법적 계량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마. 계약 금액의 변경 및 조정

- 1) 본 과업수행 중 다음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가) “갑”의 계획변경이 있을 때

나) 성과품의 인쇄비, 각종수수료, 환율 등 직접경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경비항목 중 여비, 인쇄비, 회의비는 총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상호 조정할 수 있음)

다)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과업수행자가 “갑”에게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갑”은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3) 본 과업 수행 중 “갑”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용역비용의 사후정산

- 1)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2) “을”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 및 향후 사용계획을 준공 예정일 10일전까지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 13 -

- 14 -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1) 본 과업 완료 후에도 “을”의 잘못으로 인해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 2) “갑”의 승인,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 용역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을”의 부담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3)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갑”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 용역기관의 의무

- 1) “을”은 최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갑”에 대하여 최대 이익을 도모한다.
- 2) “을”의 직원이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적정치 않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갑”이 교체를 요구할 때는 적정인원을 조속 교체하되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이행이 지연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3) “을”은 용역사업수행 계획서에 명시된 용역기술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을”은 “갑”이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을”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보고서 등을 지정된 납기 내에

자.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나)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다)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차. 특허권의 사용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카. 성과품의 소유

-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연구성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사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하되, 발주기관이 용역결과품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배포·개작·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타. 기타사항

- 가.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의 진행 중에 있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을”은 과업수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다. “을”은 최종보고서(안)를 인쇄 20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전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최종보고서의 제출 시점은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필요한 경우 준공 후 “갑”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한다.

- 마. “을”은 착수 후 “갑”이 지정한 시점에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보고한다.

- 1) “을”은 과업진행에 대한 “갑”의 설명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 총괄 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갑”의 수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 자료를 적용하며, 그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2. 보고

가. “을”은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갑”에게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류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2)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연구방향
- 3)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4) 예정공정표
- 5)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자)
- 6)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력서, 자격증명서 등)

나. “을”은 과업추진실적(공정)과 추진계획을 “갑”이 지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각 단계별 중요한 사안이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또는 타 기관과의 협조 요구가 있을 경우 처리의견을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성과보고 및 협의

4. 성과품의 인쇄 및 제출

- 가.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은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보고서 본문 및 표지는 백상지 A4 규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또한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작성자, 검토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발주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을”은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수집·인용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그 출처를 명시하여 바인더로 정리·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라.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할 경우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마. “을”은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갑”의 재검토

또는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로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을”은 용역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최종보고서 요약본 10부
- 2) 최종보고서 10부
- 3) 최종보고서 요약본 및 최종보고서를 수록한 CD 1셋트

5. 보안 사항

가. “을”의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해서도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다. “을”은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을”은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갑”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한다. 또한 불량 및 파지 등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마.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 수행상 발행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열람하거나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내용의 경우 관리대장·업무일지 작성 등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

자.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되, 정규직원외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차.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카.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타.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소			
5.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요약)			
8. 상시 종업원 수			
9. 입찰참가 제한 등 정계사항			

[별지 서식]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평 균
1. 총자본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액					
8.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 총자본)					
9.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참여 부분
책 임 연구원						연구 총괄
공 동 연구원						
연 구 보조원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최종 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진공	자격사항	
본 용역 참여업무	참여율		
주 요 경 력			
용역명 (또는 논문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연락처)

- 주 1.[제3호 서식]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 2.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 3.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참여경력 기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 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

서약자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피업지사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과업 제안서 편철 순서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경영실태 [별지 제1, 2호]
2. 참여인력 총괄표 및 이력사항 [별지 제3, 4호]
3. 기타 증빙자료 등
4. 제안서 내용(A4용지 30페이지 이내, '아래한글' 활용)